

보도시점 (지 면) 1. 19.(금) 조간
(인터넷) 1. 18.(목) 12:00

중소기업제품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

- ‘핵심부품 국산화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

정부는 공공기관 구매력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은 약 26.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 중소기업부장관이 3년주기로 지정하는 제품(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서 공공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자만 참여하는 제도(총 631개, '22~'24년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23.12.5.)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핵심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을 확정하여 총 8개 제품*을 공고한다.

* 3차원인쇄기(프린터), 무인기(드론), 발광다이오드(LED)실내조명등, 원격자동검침 시스템,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 장치, 영상감시장치

핵심부품을 국산부품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공공기관에서 우선심사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정하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심사에도 최대 가점 부여와, 수의계약이 가능한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에도 가점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최대 가점(3점), 직접생산 확인 현장 조사 생략, 성능인증 가점(3~5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소기업이 공공시장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여 더욱 많은 부가가치가 공공시장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조성우 (044-204-7540)
	판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익채 (044-204-7497)

붙임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공고문(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호

부품 국산화를 통한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부품 국산화 시범운영 대상 품목 공고

제1조(목적) 이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의 지정과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산화 대상 품목 등) ①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및 분류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산화 대상 품목의 핵심부품과 부품별 정의는 별표2와 같다.

제3조(부품 국산화의 확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하여 부품의 국산화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별표1에 따른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
2. 별표2에서 지정한 품목별 핵심부품 중 1종 이상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제품

3. 「대외무역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에 따라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이 확인된 제품

제4조(국산화 품목의 우대) 제3조에 따라 부품 국산화가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 실태조사 우대
3.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제도(EPC) 참여 우대
4. 기타 부품 국산화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부 칙 <제2024-00호, 2024. 1. 19.>

1. 이 공고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공고에 의한 부품 국산화 대상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내역 고시」 지정기간인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